##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걘	
람	

卫	m	Ħ
0		

제1083호 2022. 5. 18. (수)

## 공 고

제2022-573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2-574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5

공					
람					

발행 : 부산광역시 북구 편집 : 소통담당관 (☎309-4071)

#### 공 고

####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573호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8794호, 2022. 1. 28.) 및 같은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3호, 2022. 3. 18.)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법령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할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안 제3조, 안 제8조)

- 법 제71조의2제1항 → 법 제103조의3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 같은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ksbak@korea.kr.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항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1조의 2항제1항"을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제73조의8"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혅 햇 개 정 안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 ----법 제103조의3제1항-----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구보 및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홈페이 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 ----법 제103조의3제1항-----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 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제8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①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 의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ヱ	≦례명: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기	성조례	٠)
---------------------------------	----	------	-------	----	----	----	----	------	-----	----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고

#### ⊚부산광역시북구공고제2022-574호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8794호, 2022. 1. 28.)으로 법령용어가 변경되고, 같은법시행령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2455호, 2022. 2. 18.)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법령용어 변경사항 정리 (안 제13조 내지 안 제16조. 별지 서식)
  - 결손(처분) → 정리보류,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 나. 시행규칙 근거법령 조항 변경사항 정리 (안 제21조)
  - 영 제74조의2제6항 →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

####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보내실 곳
    -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33(구포동)(우편번호:46504)
    - 2) 연락처 : **☎** 051-309-4183, FAX 051-309-4209,

E-mail: ksbak@korea.kr.

####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3조제2항 중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을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된"으로 하고, "결손처리하고 제1항의"를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14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 부분 중 "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을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 같은 조 내용 중 "결손결정결의서"는 "정리보류결정결의서"로 하고, 같은 조 "결손처분표"는 "정리보류 표"로 한다.
-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 제15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 취소시 이월액 정리"을 "정리보류 취소시 체납액 이월"로 한다.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결손처분 취소액"을 "정리보류 취소액"으로 하고,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그 체납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로 한다.
- 제16조의 제목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를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로,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으로 하고, "속행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 중 "영 제74조의2제6항"을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목란 중 "□ 결손"을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로 하고, 하단의 참고란 중 "감액·결손은"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으로 한다.
- 같은 서식 뒤쪽 중 "징수(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하고, 하단의 "※ 감액, 결손 결정 시에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표시)로 기재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서식 가장 밑에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 별지 제2호서식 제목란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목 중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목 외 내용 중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결손"을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경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중 "감액/결손"을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불납결손액란"을 "정리보류액/시효완성정리액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 앞쪽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서식 내용 중 "제106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하며, 같은 쪽 하단의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갑)의 뒤쪽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의 제목란 중 "결손처분표"를 "정리보류표"로 하고, 같은 서식 내용 중 "제106조제1 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병)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결손처부여부란"을 "정리보류여부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결손처분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가목 중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제1항제1호"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11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제5항(제6항)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91조의 11제5항(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	1호시	너식]											( 9	앞 쪽)
				[ □ 신 □ 김 □ <mark>정</mark>	액 리.	납부		리		결정결	의서				
징	수	:	관		발				의			년	월	일	(인)
Ö	1		ᄀ		징	수	부	ПО	재			년	월	일	(인)
임 반	징	수	관		10110	감액 세 고	통 7 지 .	지 또 서 발	는			년	월	일	(인)
남			당		납 제	액	-	통	지 호			년	월	일	(인)
담	딩	=	자		납				기			년 년			(인) (인)
		곤	ŀ		세	입	(	연	도				년도		세입
세					결	정 니	귀 동	2		본세	가산금			계	
입 과		-jo0	ļ		세		ō	4							
목					가	산	<del>ار</del>	11							
		목	<u>!</u>		결	정	<u>o</u>	4							
결 정	년 년	세	액	금						원(₩			)		
납 서	<del> </del>	인	원	시(도)		Ŧ	<sup>2</sup> (시\-	군)			번길	외		명	
											수납부 등재				(인)
적			요	년도	욷	<u> </u>	분		Į.	11	환급금 정리				(인)
석 요 내역: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는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															

	내역서							
구분 동	과세표준	세율	감액 • 정리토 계	보류 • 시효완성 본세	성정리 결정액 가산금	납세인원	납액(감액) 통지번호	
			- "	L:1	7100			
※ 감액·정i	L 리보류·시효완성정	 성리는 붉은	· - - 글씨(전산 (	 이용 시 "△"	<del></del> 또는 "-"로 표	 E시)로 기재	1	

#### ■ [별지 제2호서식]

#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부 결재 통지 통지 연도 납세 세목 세액 비고 인원 번호 연월일 납기 과장 팀장 담당자

■ [별지 제3호서식]

## 세입(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액 통지서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신고납부·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리 결정하였음을 발의일 : 년 월 일 알려드립니다. 세입징수관 (인)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군 [ ]

세입연도	세목		납세인원	납부기한	비고		
세립원포	세득	본세	가산금	계	] 답세한편	남구기원 	미끄

#### ■ [별지 제4호서식]

## 수 납 부

과세번호 과세물건		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납기일 과세물건지 주소	τ	수납구분				
주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	세목	<u> </u>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시효완성정	리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m²)

## 징 수 부

년도 년도 월분

회계연도 : 결의년월 : 제 목 : 징수세목 :

		연 간	월까지	추 경	3	돈정액	징	!수액		액/시효완성			징수비율		지방	세환급금
구	분	목표액	목표액	목표액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미수액	대년간	대월간	대조정	본월분	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															
현년도	합계															
	소계															
	00세															
	00세															

297mm×210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9호서식(갑)] (앞 쪽)

			정	리보	류 표						
	결	재		「지나세즈	[] 스버 . T	引106天	제1 하	Al LLF	리 저리보.	<u> </u>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_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	주소				상호						
세급자	성명			주민(법	인)등록	번호					
과세번호	연도	세목		세액			고나네	물건			
파세민오	연포	기분	납기	세숙	본세	가산금	1	계		출신	
				조사결과	-						
	구분		조사내용	<u> </u>	조사'	일			조사자		
							직급	-	성명	서명	
주민등	록지 조사										
재신	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	·록지 등 조	도사를 위임ㅎ	h였을 경	우 확인	내용				
		조사사형	ᆉ				조사	및 호	확인자		
						나자 <u>인</u> 자	(담딩 (과		: : : : : : : : : : : : : : : : : : : :	(인) (인) (인) (인)	

-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 [별지 제9호서식(갑)] (뒤 쪽)

정 리 5	브 류 표
조사사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 ■ [별지 제9호서식(을)]

	정리보류표									
		설재								
담당자		= " 과장	국장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연도/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세목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시 효 완 성 정 리 표									
		<u></u> 열재		「기바세지스버	ᆈᇷᇬᅑᆌ	이후된 대리	사중이셔저의 항고지			
담당자		- " 과장	국장	합니다.	」 제106조제2항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과세	연도/			 납세의무자			세액			
번호	기분	세목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 ■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구서								
심의요구번호					심의요구일자	심의요구일자		
	(	성명 법인명	1)			주민(법인)등록번	호	
체납자		상호 대표지				사업자등록번호	2	
	주:	소(사업	d장)	(연택	락처 : )		,	
지방세 처	납내역	역(총 :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	I	나	부기힌	L		체납액		정리보류여부
세속장	3	H	구기인		본세	가산금	계	
체닙	·요지							
심의청	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부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붙임	: 증명	<b>ਭ</b> 서류	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년 월 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정리 보류액 포함)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방세징수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지 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년 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세무1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별지 제13호서식]

##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주소 (영업소)			생년 (법인등					
	전화번호			전자우	편주소				
(2) 신청 자격	(2) 신청 자격								
1항에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103조의3제 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연평균 회 10회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제1호 및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라 전문매	각기관으로 선정	되기를 신청합니	l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	는 인)	
부산광역	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격 Q	입증서류								

##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N. LTI	성명 (법인명)				행년월일 민등록번호)			
체납자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	의 표시							
압류	-일			년	월	일		
		압류에 전	관계된 체납역	<u>H</u>				
ШП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계		지방서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외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담당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제13조(구세 체납액의 이월)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u>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u> 구세 체납액은	② <u>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u>
<u>결손처리하고 제1항의</u> 체납액 정리부는 작성	된 <u>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에 따른</u>
하지 아니한다.	
제14조( <u>결손처분</u> ) <u>법 제106조에 따른 결손처분은</u> 별지 제1호서식 의 <u>결손결정결의서</u> 및 별지 제9호서식의 <u>결손</u> <u>처분표(갑, 을)에 따른다.</u>	제14조( <u>정리보류 등</u> ) 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는 경우에는 <u>정리보류결정결의서</u> <u>정리보류표</u>
<u>〈신 설〉</u>	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효완성정 리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9호서식(병)의 시효 완성정리표에 따른다.
제15조(지난 회계연도 <u>결손처분 취소 시 이월액</u>	제15조(지난 회계연도 <u>정리보류 취소 시 체납액</u>
<u>정리</u> )	<u>이월</u> )
해당 회계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u>결손처분을</u>	<u>정리보류를</u>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u>정리보류 취소액</u>
조정액란에 <u>결손처분 취소액</u> 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u>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u>	<u>- 정리보류 취소액</u>

#### 제16조(결손처분의 사후관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u>소</u>멸시효가 완성될 <u>때까지</u>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u>결손처분을</u>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u>속행하여야 한</u>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711167 (ス	] 그] 뭐 큰 이	사후관리)
ろしし) 全しる	! 'リエデニ	가우된 니 )

제14조에 따라 정리보류를소멸시효으 완성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u>정리보류를</u> 하여야 한다.	_
세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u>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u>	_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7 5 m.	부산광역시	н¬	7 111	7) 入	ᄀᄀ	カミコフラ	시 H -11 그	カラコ フラン
1 1	규신병.	부산됐면서	テーナ	ᅮᄸ	ᄾᆝᄼᅷ	소레	시에뉴스	입무개절	시애뉴시아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고